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3.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4호로 2019년 3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현실화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및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부정주차 요금 기준 변경(안 제2조제2항제11조)
- 나. 조례 조항 삭제 및 신설(안 별표1의 비고란 제6호 라목, 제27호)
- 다. 주차요금 감면기준 신설(안 별표1의 비고란 제25호, 제26호)
- 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할인제외 대상 추가(안 별표1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주차장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현행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요금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현행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요금 부과 적용기준을 2급지에서 3급지로 변경하였고
 -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을 통해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10%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기존 80% 할인 규정은 삭제하고,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은 면제,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 주차요금은 50% 경감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주차요금 50%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 제외 대상인 공유주차의 내용을 공유앱, 시간주차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요금 부과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과도한 부정주차 요금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할인 적용 제외 대상을 공유앱, 시간주차권 등 공유주차로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및 타구 규정과의 형평성 제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와 서울시의 신규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3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 3. 28.]